

제2항)

- ①⑥ 법제201조제1항제3호 : 개정전 법제200조제1항제3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소득” →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소득”으로
- ①⑦ 법제234조의15제2항 본문 : “대통령령으로”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 ①⑧ 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으로(관련조문 :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12. 건축물에 대한 용어 재정립 및 건축물의 범위 조정

1) 배 경

개정전의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위임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건축물을 취득한다는 것은 건물·구축물·부대설비를 포함한 일체를 취득하는 것이지 이를 각각 분리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상 건축물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어 정의의 차이로 혼란이 있어 이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중 시설물의 범위를 시설의 종류별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2) 개정개요

이번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建築物(이와 유사한 형태의 建築物을 포함한다)과 土地에 정착하거나 地下 또는 다른 構造物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